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3027호

나. 발 의 자 : 김태수 의원(김경영 의원 등 13명 찬성)

다. 발의일자 : 2021년 10월 29일

라. 회부일자 : 2022년 1월 25일

## 2. 제안이유

- 「청년기본법(2020. 8. 5.)」 및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의 청년정책에 관한 의견수렴 및 모니터링, 개발된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참여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청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제4호 신설)

나. 청년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5항 신설)

####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위해 「청년기본법」에 근거한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을 15%로 확대하고자 발의되었음.

##### 나. 청년의 정의(안 제2조 제4호 신설)

- 개정안은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청년 관련 위원회의 청년 참여 비율을 입법화하기 위해 청년의 범위를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 과거 법령마다 청년의 범위가 상이해 혼선을 야기하였으나, 「청년기본법」이 제정(2020.2)되면서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기본으로 하되, 개별 법령과 조례에 따라 연령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입법화되었음.

##### < 청년의 정의 >

- ▶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에서 “청년”이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그 밖의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 이에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개별 청년사업의 청년대상 연령을 고려해 「청년기본법」보다 확대해 청년의 범위를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정의하였음.

<서울시 청년 사업별 청년 연령 현황>

정책명	청년의 범위	관련 근거(조례 등)
청년수당	만19세~만34세	-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 및 계획서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준용
청년일자리	*만18세~만34세	- 「서울특별시 청년 일자리 기본 조례」 제2조 및 계획서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준용 * 만18세 : 고졸 기준
청년주택	만19세~만39세	-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청년공간	만19세~만39세	-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 제20조
청년창업	39세이하	- 「서울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제2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준용
청년정책네트워크 서울청년시민위원	만19세~만39세	- 계획서
청년미취업자 지원	15세~29세	- 「서울특별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 개정안은 위원회의 청년위원 참여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이하 “청년 조례”)를 참고해 청년의 연령 범위를 정한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 다. 청년친화위원회의 청년 위원 위촉 비율 명시(안 제8조 제5항 신설)

- 「청년기본법」은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토록 하고 있고(제1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청년위원회”)는 50% 이상, 청년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시장이 정하는 위원회는 10% 이상을 의무화하고 있음(제20조 제1항 제4호 나목)
- “청년 조례”는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청년친화위원회’로 명명하고 위촉직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10조 제3항).
- 이에 따라 서울시는 청년위원회의 의결(2021.12)을 거쳐 27개의 청년친화위원회를 선정하고, 위촉직위원의 청년 비율을 청년위원회는 50% 이상, 그 외 청년친화위원회는 10% 이상이 되도록 정하였음(청년친화위원회 현황은 붙임자료2 참고).
- 청년위원회는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거나 청년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위원회를 청년친화위원회의 선정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어 기준이 다소 주관적이고 불명확함.
- 개정안은 청년친화위원회의 청년위원 비율을 서울시가 정한 10% 이상보다 높은 15% 이상으로 명시해 청년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실질적 참여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청년기본법」의 위임을 받은 “청년 조례”의 절차에 따라 청년친화위원회의 청년위원 비율을 10% 이상으로 정한 상황에서 다른 조례가 15% 이상으로 상향 규정하는 경우 두 조례 간 입법 충돌과 해석 및 적용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법령 기준에 맞춰 청년위원의 비율(10% 이상)을 조정하고 향후 청년친화위원회 제도의 자의적인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선정기준을 조례나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수정의견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④ (생략) <u>&lt;신설&gt;</u>  ⑤ ~ ⑦ (생략)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서울시 지방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위원 회를 구성할 경우 위원 중 <u>15% 이상</u> 을 청년 으로 위촉한다. ⑥ ~ ⑧ (현행 제5항 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서울시 지방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위원 회를 구성할 경우 위원 중 <u>10% 이상</u> 을 청년 으로 위촉한다. ⑥ ~ ⑧ (현행 제5항 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담당 조사관	연락처
김성만	2180-8055

## <관련 규정>

「청년기본법」 제15조(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범위와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의 범위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해야 하는 위원회의 범위 및 청년 위촉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조정위원회: 2분의 1 이상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라 한다): 2분의 1 이상
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2분의 1 이상
4.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
  - 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구성하는 위원회로서 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국무총리가 정하는 위원회: 10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국무총리가 정하는 비율
  - 나. 시·도지사가 구성하는 위원회로서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시·도지사가 정하는 위원회: 10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시·도지사가 정하는 비율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③ 시장은 「청년기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청년친화위원회를 선정하고 해당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청년친화위원회 선정 현황**

○ **감사청구심의회 등 27개 위원회**(전체 위원회의 12.2%)

연번	위원회명	소관부서명
1	감사청구심의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2	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위원회	노동정책담당관
3	기후변화대책위원회	환경정책과
4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노동정책담당관
5	녹색서울시민위원회	환경정책과
6	문화시민도시정책위원회	문화정책과
7	보육정책위원회	보육담당관
8	생활임금위원회	노동정책담당관
9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양성평등정책담당관
10	성평등위원회	양성평등정책담당관
11	수돗물평가위원회	상수도사업본부 수질과
12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갈등관리협치과
13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시민숙의예산과
14	시민청운영자문위원회	시민소통담당관
15	어린이청소년인권위원회	청소년정책과
16	에너지정책위원회	환경정책과
17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	아이돌봄담당관
18	인권위원회	인권담당관
19	일자리위원회	일자리정책과
20	정보공개심의회	정보공개정책과
21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건축기획과
22	창업정책위원회	창업정책과
23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미래청년기획단
24	청소년육성위원회	청소년정책과
25	학자금대출이자지원심의위원회	미래청년기획단
26	한강시민위원회	한강사업본부 기획예산과
27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위원회	시민소통담당관